

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■ 장기요양기관 기관정보

시설명	금빛재가복지센터	시설유형	방문요양, 방문목욕
소재지	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492-12	대표자	최영임
장기요양기관기호	3-41390-00437	E-MAIL	jinu5728@naver.com
연락처	TEL. 031-495-7730	홈페이지	https://blog.naver.com/jinu5728

■ 이용계약의 목적

기관과 대상자는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.

■ 이용계약기간 및 계약해지

(1) 계약기간

- ①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
-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-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
(2) 계약해지

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.

- ①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서비스 외 부당한 급여행위 요청이 있는경우
- ②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-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- ④기타 이 계약이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■ 이용자 관리

- (1) 이용대상은 [노인장기요양보험]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한다.
- (2)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.

■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

1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(1)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원칙과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
- (2) 수급자가 제공받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(3)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(4)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시설상태, 조치 및 생활관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(5) 수급자의 재활에 필요한 내용과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
- (6) 수급자의 인권에 관한 모든 권리
- (7)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수급자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는 권리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

- (1) 수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수급자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(2) 서비스제공자 및 직원에 대한 폭언·폭행·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
- (3) 수급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
- (4) 장기요양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을 청구액 내에서 납부할 의무
- (5) 수급자의 상태에 변동 또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
- (6) 수급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 타 시설 또는 병원으로 옮겨서 요양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
- (7) 기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및 신의성실 협력의 원칙에 대한 의무

■ 이용절차

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~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.

